

교수-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시행 세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우리 대학교의 교수-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의 평가, 관리 등에 있어 특혜 가능성과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,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우리 대학교 소속의 교원 본인 및 자녀에게 모두 적용한다.

제3조(수강지도 및 사전 신고제) ① 대학원교학처는 학생이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수강신청안내책자 및 수강신청 시스템 등에 해당내용을 공지한다.

② 소속 대학원장 또는 지도교수는 소속 전공 학생이 부모의 과목을 가급적 수강하지 않도록 수강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③ 대학원교학처는 자녀 등에 대한 강의 회피, 사전 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여 안내하여야 한다.

④ 담당교수는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자녀인 경우 사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, 필수과목 이수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“교수-자녀 수강 신고서[별지 제1호 서식]”를 작성한 후 수강변경기간 종료일 내에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원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대학원교학처는 신청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수강 변경 및 수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성적평가 및 자료보관) ① 사전에 신고하고 부모의 강의를 수강한 경우 담당교원은 성적부여 후 10일 이내 성적산출 근거(출석부, 성적평가표, 시험지, 답안지, 과제물 등 사본)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, 대학원장은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성적산출 근거와 “교수-자녀 성적평가 공정성 평가표[별지 제2호 서식]”를 대학원교학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해당 학생의 성적평가 관련 자료는 대학원교학처에서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위반 시 제재조치)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함에도 미신고,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 위 사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해 교원복무위반심사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교수-자녀 수강 신고서

1. 교과목 내역

대학원	전공	이수구분	교과코드	과목명	학점	시간	요일/교시	담당교원

2. 자녀인적사항

학번	성명	대학원	전공	연락처

상기와 같이 수강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담당교수(신청인)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

수강자녀(신청인)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

경유	원장

결재	담당	팀장	처장

백석대학교 총장 귀하

교수-자녀 성적평가 공정성 평가표

1. 인적사항

구분	대학원	진공	직번(학번)	성명	비고
교수					
자녀					

2. 점검사항

과목코드	과목명	학점	성적(등급)
* 정상적인 출석 여부 *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여부 * 시험 답안지 채점의 공정성 여부(타 학생 답안지와 비교 필요) * 과제물 등의 제출 여부 및 적절한 점수의 부여 여부 * 기타 성적평가의 공정성 여부			

3. 의견

년 월 일

대학원장: _____ (서명)

또는 날인)

백석대학교 총장 귀하